



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3. 12. 11.] [조례 제4010호, 2023. 12. 11., 일부개정]

경기도 성남시(청년청소년과), 031-729-3032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11.13, 2019.09.16., 2022.09.26.>

제2조(설립) 성남시 청소년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.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<개정 2013.11.13>

제3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개정 2011.12.16>

1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
 2. 청소년보호·복지·상담에 관한 사업<개정 2013.11.13>
 3.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·관리 기능<일부개정 2019.09.16.>
 4. 학교 교육과정 연계·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<본호신설 2015.04.13>
 5. 청년의 교육·복지·문화·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<본호신설 2023.12.11.>
 6.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,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<개정 2013.11.13, 2019.09.16., 2022.09.26., 2023.12.11.>
-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신설 2009.04.27> <일부개정 2019.09.16.>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3.11.13>

- ② 시는 재단의 설립, 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<개정 2015.04.13>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 2. 명칭
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<일부개정 2019.09.16.>
 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<일부개정 2019.09.16.>
 9. 사업에 관한 사항
 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11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<본호신설 2019.09.16.>
-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<본항개정 2019.09.16.>

제6조(임원 등) ① 재단에는 이사장·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<개정 2013.11.13, 2016.9.30.>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5.04.13, 2019.09.16.>

제7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.<일부개정 2019.09.16.>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3.11.13>

제8조(위원회) 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<일부개정 2019.09.16.>

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9.09.16.>

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04.13, 2019.09.16.>

제9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11.13, 2019.09.16.>

제10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3.11.13>

제11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<개정 2013.11.13>

제12조 삭제<2022.09.26.>

제13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.<개정 2013.11.13, 2019.09.16.>

제14조(보고·검사·감사 등) <본조개정 2019.09.16.>

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인력지원 요청) ① 재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3.11.13, 2019.09.16.>

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1.13>

제16조(운영규정)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<개정 2013.11.13, 2015.04.13, 2019.09.16.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일부개정 2019.09.16.>

부칙 <제정 2007.08.06 조례 제21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09. 04. 27 조례 제231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1.12.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개정 2013.11.13 조례 제27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5.04.13 조례 제28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일부개정 2016.9.30. 조례 제301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일부개정 2019.09.16. 조례 제340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일부개정 2022.09.26. 조례 제379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일부개정 2023.12.11. 조례 제401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